#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소병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234

발의연월일: 2021. 8. 25.

발 의 자:소병철·장철민·윤재갑

진성준 · 오영환 · 송기헌

김영주 · 임호선 · 정일영

김정호 · 위성곤 의원

(119]

### 제안이유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에 힘입어 글로벌 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미국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 등핵심산업기술분야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였음. 국내에서도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백신 등의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의 제고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음. 첨단·미래기술은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이라는 점에서, 주요 기술에 대한 산업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이러한 국가 핵심 첨단·미래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인력양성, 산학연계, 사업화 등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또 비합리적인 규제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기술개발 환경을 구축함과 동시에

국가핵심 산업기술 또는 운용 인력이 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현재 정부가 기술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는 새로운 형태의 첨단·미래 산업을 적시에 선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가 없어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하고,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산업 집중화를 통한 시너지에 기반하여 혁신·첨단·미래신기술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의약, 생명공학, 전자·전기, 에너지, 항공우주 분야 등 기술 집약 도·기술혁신 속도,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국민 경제에 미치 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등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 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 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

치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규제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을 두도록 함(안 제8조).
- 마. 기본계획 수립·변경과 국가핵심전략산업분야 경쟁력강화에 필요 한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핵심 경쟁기술을 선정하도록 하고, 핵심전략산업기업 선정에는 관계 부 처의 의견수렴·협의를 거치도록 하며, 핵심경쟁기술과 핵심전략산 업의 선정·변경·해제시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 또는 혁신지 원단의 자문을 거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 아. 정부의 핵심전략산업 기업과 강소·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및 기금 투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자. 정부의 핵심경쟁기술 기반학문에 대한 연구·기술개발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
- 차. 정부가 핵심경쟁기술의 수준향상과 산업·기술 표준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한 인적교류·공동연구개발의 근거와 기술이전·사업화촉진을 위한 지원시책의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 카. 정부는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핵심경쟁기술 혁신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 타. 정부의 전문인력 발굴·양성을 위한 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 1조)
- 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시설 지원의 특례와 육성시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부터 25조까지).
- 하.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우대, 조세 감면, 근로기준법 특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특례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 거.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위한 특별법」은 「소재·부품 ·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함(안 제35조).
- 니.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국 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고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국가핵심전략산업에 관한 규제 개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등을 관리· 감독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더.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로 핵심경쟁기술이 선정된 경우 "국 가핵심기술"이 지정된 것으로 보고 핵심경쟁기술을 보유한 기업・ 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 해당 기술을 해외로 매각, 이전, 인 수・합병, 합작투자 등을 진행하려는 경우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했으며 「상법」의 적용 특례 사안을 규정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및 가중처벌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9조 및 제40조).

- 리. 핵심경쟁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9조에 따른 대상기관 퇴직직원에 대한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1항의 퇴직자가 퇴직일부터 3년 이내에 외국기업 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으 며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 록 하고 제41조 제2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 과하도록 함(안 제41조 및 제42조).
- 머. 정부가 연구·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전문인력 양성, 국가핵심전략 산업단지의 지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관한 특례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43조).
- 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할 수 권한에 관한 사안은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함(안 제44조).
- 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 위원으로 경우와 중 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단체 및 법인 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간주함(안 제45조).

#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핵심 전략분야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등 체계적 지원을 통해 혁신기술 및 첨단·미래 신기술을 육성·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국가핵심전략산업"이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의 속도가 빠르거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술과 관련된 산업 중에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가. 의약품 제조기술 등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 나. 「생명공학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생명공학 관련 기술
  - 다.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항공우주과 학기술

- 라.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기술 마. 반도체 제조기술 등 전기·전자공학기술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 2. "핵심경쟁기술"이란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이 되는 주요 기술 로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가 선정하는 기술을 말한 다.
- 3. "핵심전략산업기업"이란 핵심경쟁기술과 관련한 기술적 역량과 생산능력을 갖춘 기업 또는 성장이 유망한 기업으로서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4.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란 국가핵심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지원시설 등을 집중시킴으로써 지속가능한 기술혁신을 이루고 연구개발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산업단지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행정·재정·기 술 등 종합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핵심전략산업기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제조 등을 통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의 특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국가핵심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등

- 제5조(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 핵심전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발전 기반 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이 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7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의 기본 목표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 2.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발전전망
  - 3.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 4.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산·학·연 협력을 통한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5. 국가핵심전략산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6. 국가핵심전략산업과 관련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 7. 품질·성능 향상과 시설투자 확대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8.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지정과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 9. 국가핵심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정비와 개선에 관한 사항
-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③ 국가핵심전략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핵심전략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 ①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회의를 소집·주재할 수 있다.
  - 1. 국가핵심전략산업과 핵심경쟁기술의 선정 및 관리
  - 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3.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실적의 평가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 작성
  - 4.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중장기 전망 분석 및 국가비전 수립
  - 5.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경쟁력 혁신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 6.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조정
  - 7.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수급안정 및 실증·성능 검증·생산 지원
  - 8.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지정 및 해제
  - 9. 제25조에 따른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 육성 시책의 수립

- 10.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조율
- 11. 핵심경쟁기술 인력 양성 기관 설립 권고
- 12. 제39조에 따른 핵심경쟁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의 기술 수출 및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사안
- 13. 국가핵심전략산업 관련 기술·예산·자금·인력·입지 등 규제 ·제도개선의 부처 간 조율 및 종합 전략 수립
- 14. 국가핵심전략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수립 및 관계 행정기 관간의 조율
- 15. 그 밖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2.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경쟁력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 3.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제 5항에 따른 산·학·연 경쟁력강화위원회의 장을 포함한다)

- ④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 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정책과 관련한 특정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산·학·연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산·학·연 경쟁력강화위원회"라 한다)로부터 국가핵심전략산업분야의 선정과 경쟁력 강화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 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협회·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 으로 둘 수 있다.
- ⑦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 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및 산·학·연 경쟁력강화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실무추진단) ①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제29 조부터 제31조까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통상 자원부에 실무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핵심전략산업 기반 조성과 기업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 제9조(실태조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거나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관련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국가핵심전략산업과 관련 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기업·대학·연구기관 및 그 밖의 공공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있다.
  -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통계의 작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시행계 획과 주요 정책 등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통계를 조사·분석 및 관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핵심경쟁기술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전략 산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관계 부처 사전 협의를 거쳐 전략산업경 쟁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기술에 대한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심경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서 해당 기술이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점유율, 해당 분야의 연구동향 및 기술 확산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정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영업비밀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정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핵심경쟁기술의 선정기준, 선

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핵심전략산업기업의 선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핵심전략산업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 1. 총매출액 중 국가핵심전략산업의 매출액 비중 및 총매출액 중 핵 심경쟁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비 지출 비중
  - 2. 총매출액 중 국가핵심전략산업의 매출액 비중 및 핵심경쟁기술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또는 전문 연구인력 보유 현황
  - 3. 그 밖에 핵심경쟁기술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선정을 받은 기업에 대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핵심전략산업기업 선정 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핵심전략산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선정절차, 선정을 위한 조사,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핵심경쟁기술 및 핵심전략산업기업 선정 시의 의견조회,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 핵심경쟁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핵심경 쟁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의 변경이나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

- 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술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소관인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전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핵심경쟁기술의 범위 또는 내용을 변경 또는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③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핵심경쟁기술의 선정 및 제1항에 따른 핵심경쟁기술의 변경·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선정대상 기술을 보유·관리하는 기업 등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선정 대상 기술을 보유하는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은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핵심경쟁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⑤ 경쟁력강화위원회는 제11조제1항 및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핵심 경쟁기술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제20 조에 따른 혁신지원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 ⑥ 핵심전략산업기업의 변경·해제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혁신지원단의 자문을 들을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핵심경쟁기술 및 핵심전략산업 기업의 변경 및 해제의 기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링으로 정한다.
- 제14조(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장 성과 유망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 관과 협의를 거쳐 국가핵심전략산업 분야의 강소기업과 창업기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업에 대해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핵심경쟁기술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 선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강소기업 또는 창업기업의 선정기준과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선정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5조(핵심전략산업기업등에 대한 지원) ① 정부는 핵심전략산업기업, 제14조에 따른 강소기업 및 창업기업(이하 "핵심전략산업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있다.
  - 1.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등
  - 2. 재정, 금융 등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 3.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사업에 대한 지원

- 4. 기술 · 인력 · 금융 · 경영 · 입지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 · 알선
- 5. 특허, 기술동향 등 기술혁신을 위한 정보의 제공
- 6. 해외진출 전략에 대한 지도 및 자문 등
- 7. 그 밖에 핵심전략산업기업등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핵심전략산업기업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핵심전략산업기업등에 투자할 수 있다.
  -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 제17조(연구·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경쟁기술 기반 학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연구·기술 개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1. 국가핵심전략 산업 분야의 연구개발사업
  - 2. 기업,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간의 공동연구개발사업
  - 3. 그 밖에 국가핵심전략 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로 하여금 연구·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 제15조에 따른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을 포함한 핵심경쟁기술 관련 분야 기업
- 2. 국공립연구기관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
- 4.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
-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 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 6. 그 밖에 핵심경쟁기술 관련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③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술개발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 1. 제1항제2호의 공동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2. 제15조에 따른 핵심전략산업기업등
- 3. 그 밖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⑤ 정부는 제1항의 연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지원 범위, 방법 및 절차,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핵심경쟁기술의 연구 및 기술개발 의 수준 향상과 산업·기술 표준화 및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교류 및 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① 정부는 핵심경쟁기술의 활용과 연구·기술개발사업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적·기술적 ·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술활용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핵심경쟁기술 혁신지원단 등) ①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핵심경쟁기술 혁신지원단(이하"혁신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중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 5. 그 밖에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술·인력·경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② 핵심전략산업기업 등 핵심경쟁기술 관련 분야 기업은 연구·기술 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위하여 혁신지원단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자 문 및 연구원·전문가의 파견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혁신지원단의 구성·운영과 제2항의 지원 요건·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전문인력 양성) ①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인력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과 그 밖의 전문기관을 전문인력양 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과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지정 등

- 제22조(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 조성과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이하 "전략산업단지"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전략산업단지의 지정 요건 및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특례) ① 제22조에 따라 전략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의4에 따른 산업단지가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 ② 전략산업단지는 산업입지법 제29조제2항의 산업단지로 본다.
- 제24조(전략산업단지의 지정 해제)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라 전략산업단지의 지정을 전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1. 전략산업단지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제22조제3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 3. 관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
- 4.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전략산업단지의 육성시책 및 지원) ① 정부는 국가핵심경쟁산 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략산 업단지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전략산업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1.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 2. 그 밖에 전략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부지의 조성에 필요한 비용
  - 2. 의료·교육시설 및 주택 등 각종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 3. 임대료 감면
  - 4.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략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비용
  -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하여 국유·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제6항 또는 제10조의5제6항에 따른 심의를 받을 경우, 우선하여 심의할 수 있다.
- ⑥ 제1항의 지원시책에 포함될 사안과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산업단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장 국가핵심전략산업 육성ㆍ지원 및 특례 등

- 제26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경 쟁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핵심전략산업기 업등이 우선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조세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핵심전략산업기업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이 개발한 기술을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지방세특례 제한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 및 주민세를 감면할 수 있 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이 당사자로 참여하 는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 한법\_ 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 등의 등기 에 따른 등록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의 청산소득 에 대한 법인세, 합병으로 소멸되는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의 주주의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의 연구시설에 대하여
- 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1.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 제29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 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은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핵심경쟁기술 인력 양성 기관 설립의 권고가 있는 경우, 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을 우선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산업

- 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계획 신고를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30조(「수도권정비계획법」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9조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산업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8조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수도권 총량규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31조(「근로기준법」에 관한 특례) 핵심전략산업기업등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의 예외를 둘 수 있다.
- 제32조(「병역법」에 관한 특례) 병무청장은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 제33조(「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특례) 고용노동부장관은 핵심전략 산업기업등 또는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산 업안전보건법」 제59조에 따른 도급의 승인을 요청한 경우와 핵심 경쟁기술에 필요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같 은 법 제108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34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① 주식회사인 핵심전략산업기업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자 외에도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당해 기업의 기술·경영의 혁신 등

- 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 1. 핵심전략기술 혁신지원단 구성원
- 2. 제20조제2항에 따라 파견된 연구원 또는 핵심전략기술 혁신지원 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 3.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 치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자. 이 경우 "벤처기업"은 "핵심전 략산업기업등"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하여 손익인식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35조(「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준용)이 법에 따른 핵심전략산업기업등, 핵심전략기술 및 전략산업단지에 대한 특례에 관하여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55조, 제57조부터 제65조까지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이 경우 "특화선도기업"은 "핵심전략산업기업"으로, "핵심전략기술"은 "핵심경쟁기술"로, "경쟁력위원회"는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로, "특화단지"는 "전략산업단지"로 본다.
- 제36조(규제개선) ① 정부는 국가핵심전략산업의 기반조성과 육성 및 경쟁력강화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 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핵심경쟁기술 개발과 활용에 관한 규

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규제발굴 및 개선방안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7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핵심전략산업기업등과 전략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및 연구기관은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국가핵심전략 산업에 관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않은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신청기업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수 있다.
  - ④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

- 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⑦ 제4항에 따른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결과, 연구개발, 시험
  ·평가, 검증 등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융합 촉진법」 제10조의3의 절차에 따라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 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 ② 제37조의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법률」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 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 2. 제37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장 기술 보호

- 제39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및 가중처벌) ①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핵심경쟁기술이 선정된 경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9조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핵심경쟁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이 해당 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하고자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인수·합병, 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을 포함한 핵심경쟁기술 관련 분야 종사 기관의 임·직원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의 대상으로본다.
- ④ 핵심경쟁기술을 대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 제40조(회계장부 열람 등의 예외) 핵심전략산업기업등을 포함한 핵심 경쟁기술 보유 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466조에 따라 회계의 장 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회사 업무의 운영과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제41조(퇴직직원 취업 지원 및 제한) ① 정부는 제39조에 따른 대상기관을 퇴직한 직원(퇴직 예정자를 포함하며, 이하 "대상기관 퇴직자"라 한다)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핵심경쟁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과 관련한 지원을할 수 있다.

- ② 대상기관 퇴직자가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외국기업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상기관 퇴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각 호에 따른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2조(과태료)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7장 국가균형발전의 고려

제43조(국가균형발전의 고려) 정부는 이 법 제17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를 추진함에 있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시책을 고려할 수 있다.

## 제8장 보 칙

제44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

다.

- ②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전략산업경쟁력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제4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기관과 단체 및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